공<mark>통분</mark>야 사업시행지침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업 정 책 과	과 장 송남근 사무관 이충녕	044-201-1711 044-201-1721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규모화효과 증감율을 10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8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추 지 HJ HJ
78 작시표	목표치	′ 15	′ 16	'17	산출시기	측정방법
규모화효과 증감율 (%)	100	-	-	-	′18. 12	폐업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폐업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재배면적(사육 두수) / 농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020
합 계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Ⅱ. 2018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 보고 시 폐업지원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3월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8년도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2018년도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 하고 있는 자
 - 전부 임대자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 지법 제23조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구두계약 포함)에 한해 폐업지원 가능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동일품목의 소유권이 협정 발효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경우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은 계속 재배·사육하면서,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에 대해서만 폐업 신청할 경우는 부분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u>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u>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 ①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8년 기준 : 직전 5년('13~'17)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2,332천원
 -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⑧ '13년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농업등)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 축산물의 경우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가. 철거·폐기 면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철거·폐기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통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 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 (5) 지급 기한 : 2018.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8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발동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품목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 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 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7월 31일까지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도(지자체)

-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7월 31일까지
 -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ㅇ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열람 등을 통해 확인
-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가.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나. 현지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 다.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 (3) 심사위원회 심사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8. 9. 28.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12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필요시)
 -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8 10.12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 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토지·입목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 (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2019.3.29.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사후 관리
 -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 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단, 사업장·입목 등은 본인 소유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일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기존 온실·축사 등의 시설을 철거·폐기한 이후 토지 소유자(임대인)가 동일 품목을 재배·사육 할 수 있음.
 - 상기의 경우도 시설 재활용을 위해 온실. 축사 등을 철거·폐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할 수 없음
 -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온실·축사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배·사육한 임차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 FTA 발효일 시점에 의해 불가피하게 부분폐업을 한 농업인등은 해당품목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재배·생산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5년간)에는 해당 품목의 면적을 확대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Ⅳ. 2019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u>사업 추진 절차</u>

업무절차	시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월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downarrow						
② 사업신청	5~7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downarrow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④ 연차별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downarrow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downarrow						
⑥ 지원금 지급	11~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 →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원예·특작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원예·특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산 업 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이남윤	044-201-2231 044-201-2240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 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규모화효과 증감율을 10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8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ઢ એ મો મો
성파시표	목표치	' 15	′1 6	'17	산출시기	측정방법
규모화효과 증감율 (%)	100	-	-	-	′18. 12	폐업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폐업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재배면적(사육 두수) / 농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020
합계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Ⅱ. 2018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 보고 시 폐업지원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3월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8년도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2018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전부 임대자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구두계약 포함)에 한해 폐업지원 가능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다만, 양송이버섯의 경우는 330 제곱미터(재배상(버섯배지) 면적)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양송이 : 3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사실상 폐업상태)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동일품목의 소유권이 협정 발효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경우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은 계속 재배·사육하면서,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에 대해서만 폐업신청 할 경우는 부분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u>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u>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 ①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 균치 이상인 자
 - '18년 기준 : 직전 5년('13~'17)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2,332천원
 -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⑧ '13년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폐업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가. 폐업 면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재배상 (버섯배지)면적 중 폐업한 면적
 - 폐업지원 대상 품목 : 양송이 버섯

- 폐업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버섯 재배사 등 사업장을 철 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버섯 재배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 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폐업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 버섯 재배상(버섯배지) 면적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 「통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 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 (4) 지원 한도액: 해당 없음
- (5) 지급 기한 : 2018.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8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품목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 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 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7월 31일까지
-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재배사 토지 소유자와 재배사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확인서를 재배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종균)·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정부보급종 종자구매 확인서, 양송이 종균·접종배지·발효배지 구입 확인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7월 31일까지
 -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다만, 양송이버섯의 경우는 330 제곱미터(재배상(버섯배지) 면적) 이상인 자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열람 등을 통해 확인
-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 다.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8. 9. 29.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 12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필요시)
 -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8. 10.12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워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토지·입목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 (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월간 지급 실태와 최종 지급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월 폐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최종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최종 보고 시기 : 2018. 12. 31.까지(정산보고는 2019.3.29.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 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온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할 수 없음.
 - 단, 사업장·입목 등은 본인 소유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일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기존 온실 등의 시설을 철거·폐기한 이후 토지 소유자(임대인)가 동일 품목을 재배할 수 있음.
 - 상기의 경우도 시설 재활용을 위해 온실 등을 철거·폐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할 수 없음
 -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온실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배한 임차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FTA 발효일 이후 소유로 인하여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한 해당품목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재배·생산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5년간)에는 해당품목을 확대할 수 없음
 - ※ 잔여면적 정의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고시일 현재 해당품목을 재배· 생산하거나 사용승인·준공·등록한 온실 등 사업장을 의미함

(2) 지원금의 환수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Ⅳ. 2019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1.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임업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임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사무관 이경범	042-481-4190 042-481-4194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 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규모화효과 증감율을 10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8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측정방법	
8파시표	목표치	′ 15	'16	'17	산출시기	্ৰ কি ক য়
규모화효과 증감율 (%)	100	-	-	-	′18. 12	폐업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폐업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평균 재배면적(사육두수) : 재배면적(사육 두수) / 농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020
합계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Ⅱ. 2018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재배·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 보고 시 폐업지원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 과를 포함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8년도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2018년도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 토지 임대자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합법적인 토지 임대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 가능
 -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온실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배한 임차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 (2)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동일품목의 소유권이 협정 발효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경우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은 계속 재배·사육하면서,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에 대해서만 폐업신청 할 경우는 부분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u>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u>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 ①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 균치 이상인 자
 - '18년 기준 : 직전 5년('13~'17)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2,332천원
 -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⑧ '13년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지원형태 및 기준

-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3) 지원 기준

폐업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가. 폐업 면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폐업한 면적
 - 폐업지원 대상 품목 : 호두
 - 폐업 적용 :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온실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온실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

- 폐업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한다.
- 폐업 면적산출 = 실제 철거·폐기 면적 × 실제 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 다만, 폐업지원 대상면적은 실제 철거·폐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을 경우 실제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표준재식주수

구 분	표준재식주수	비고
호 두 -	100주/1ha	

- * 특화품목 기술보급서(유실수 재배, 산림청, 2008년)
- 예1) 80주가 재식된 1.0ha 소식재배 호두 재배지 지원대상면적: 0.8ha(2.424평)
 - * (산출방식) 실제면적(1.0ha) × [실제재식주수(80주/ha) / 표준재식주수(100주/ha)]
- 예2) 120주가 재식된 1.0ha 호두재배지 : 실제재식주수가 표준재식주수보다 많으므로 실제면적 1.0ha(3,030평)을 지원대상면적으로 산정
- 실제재식주수의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①「통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 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 또는 임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임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 액(다만,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순수익액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철거·폐기 면적 산출 시 제외할 수 있다.
 - ①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중 일부가 생산성 및 상품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면적
 - ② 현지 조사 시 유실·매몰·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면적
-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 (5) 지급 기한 : 2018.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8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품목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 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 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7월 31일까지
-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확인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7월 31일까지
 -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 가.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재배 면적을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18.7~9월)
-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열람 등을 통해 확인
-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나. 현지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 다. 결과통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18. 9. 29까지) → 산림청장(2018.10.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8.10.12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필요시)
 -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산림청(2018.10.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2018.10.12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 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토지·입목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 (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수령 전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지급,
 다만 상속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속 대표자에 지급을 위임한다는 상속권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
-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월간 지급 실태와 최종 지급결과를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월 폐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12일까지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 보고 시기 : 산림청(익월 5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익월 12일까지)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최종 지급 결과를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 보고 시기 : 산림청(2018.12.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2019.1.7.까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보고 시기 : 산림청(2019.3.1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2019.3.29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사후 관리
 -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 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온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할 수 없음.
 - 단, 사업장·입목 등은 본인 소유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일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기존 온실 등의 시설을 철거·폐기한 이후 토지 소유자(임대인)가 동일 품목을 재배할 수 있음.
 - 상기의 경우도 시설 재활용을 위해 온실 등을 철거·폐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할 수 없음
 -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온실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재배한 임차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 FTA 발효일 시점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품목에 대하여만 폐업을 한 농업인등은 해당품목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재배·생산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5년간)에는 해당품목의 면적을 확대할 수 없음

(2) 지원금의 환수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Ⅳ. 2019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이상훈	044-201-2331 044-201-2339

I.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염소·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폐업지원 대상 품목 발생 시,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8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측정방법
7847/五	목표치	' 15	′16	'17	산출시기	ল <i>'</i> পে য়
규모화효과						폐업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 / 폐업전
증감율	100	-	_	_	′ 18. 12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
(%)						* 평균 사육두수 : 사육두수 / 농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020
합 계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국 고	545,017	102,717	102,717	102,717	205,434

* FTA 폐업지원제 전체 예산액임

Ⅱ. 2018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ㅇ 유형의 비용 :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 ⇒ 염소는 사육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크고 폐업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조사되어 '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2.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 ②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 보고 시 폐업지원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3월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농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선정대상 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8년도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 '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3.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토지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해당 축사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 철거·폐기 적용: 염소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사 등 시설의 재활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5년간 염소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제한함
- * 철거·폐기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철거·폐기해야 함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 전부 임대자의 경우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구두계약 포함)에 한 해 폐업지원 가능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ㅇ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3)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4)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17년도까지 염소 사육 규모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에서 정하는 염소 사육농가의 축산농업인 으로서의 사육규모기준
 - 염소 : 20마리 이상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나.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 ①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년도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8년 기준 : 직전 5년('13~'17)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2,332천원
 -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 기준

구	분	산 출 공 식
염	소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가. 출하 마릿수: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판매사실확인서('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5호의4) 등으로 확인
-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함
 - ① 「통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 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다만,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동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다만,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10년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순수익액을 산출한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 연도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의 평균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연도 순수익액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③ 위 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 * 조사된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수익액이 지나치게 낮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염소는 FTA이행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순수익액으로 사용
- (4)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 (5) 지급 기한 : 2018.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8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 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 (6) 가축의 처분범위 및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 시기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축을 처분한다.
 - 가축처분 기준 : 도축장, 가축시장, 중간 상인의 거래 등을 통한 출하가 해당되며, 출하 여부는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 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발동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품목의 경우,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농업인등 지원센터

-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 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지급 신청 기간 : 7월 31일까지
- (2) 신청 방법(농업등)
 - 농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입목 등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페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 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 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을 사육하거나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유통업체와 농축협과의 계약서류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 지원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도(지자체)

-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7월 31일까지
 -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 다. 지급 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 (2)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3)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 * 미등록자인 경우 등록 후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나.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사육면적 및 규모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신청자의 지원 대상 품목 사육규모를 1차 확인(접수 직후)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 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 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등을 통해 확인
 - 바. FTA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 사. 기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 여부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가. 조사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나. 현지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 다. 결과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 (3) 심사위원회 심사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자기 소유 사업장·토지·입목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8.9.29.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13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일시 폐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필요시)
 - 가. 우선순위 선정 : 시장·군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확정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8 10.13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농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 지원금 지원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폐업지원금 지급

-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폐업예정지의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 폐업지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 >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페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보
- (3) 폐업 통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토지·입목 등을 폐업지원을 신청한 회계연도 내 철거·폐기한 후 서면 (증빙자료 첨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철거·폐기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확인 하고 폐업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폐업 지역 사진 촬영)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5)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 (6)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2019.3.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 (1) 사후 관리
 -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재배· 사육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 폐업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공통)>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재배·사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고, 카드를 이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상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조치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 염소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간 염소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본인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축사 등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육한 임차농의 경우는 폐업지원금 신청 불가

(2) 지원금의 환수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③ 폐업을 한 농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하는 경우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Ⅳ. 2019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직후

<u>사업 추진 절차</u>

업무절차	시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고시	1~5	・폐업지원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downarrow		
② 사업신청	5~7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downarrow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7~9월	 · 폐업 신청지,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downarrow		
④ 연차별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재정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수립(시·도)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농식품부)
\downarrow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0월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따른 자금 배정 요청(시·도) ・자금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downarrow		
⑥ 지원금 지급	11~12월	 ・폐업 예정지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시·군·구→농업인등)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농업인등→시·군·구)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별표 서식

[별표 1]

<u>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u>

구 분	사 업 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설 등	
	축사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생사비육시설포함)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역관리	장비 5년 시설 10년
축산분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생축수송차량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축산정책	융자금 상환시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13년 신규)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원예경영	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현 원예시설현대화지원)	원예경영	10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원예경영	10년
과수·원예 분야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13년신규)	원예경영	10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원예경영	8년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원예산업	1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산업	5~20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임산물유통구조개선·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임업분야	산림경영지도(산림조합특화사업·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임업경영	장비 5년 시설 10년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이차보전)	임업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한·EU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	
	한우농가조직화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경영	융자금 상환시까지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농업등]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고	
지역 조건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⑤ 기타	조건 불리지역 우선	
지역 조건 (경사도)	① 50도 이상 ② 40~49도 ③ 30~39도 ④ 20~29도 ⑤ 10~19도 ⑥ 10도 미만 ⑦ 평지	그선 출내시크 干包	
폐업 규모	① 0.1~0.5ha ② 0.5~1.0ha ③ 1.0~5.0ha ④ 5ha 초과	소규모 우선	
관련 장비 (운송)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트럭 ④ 기타	보유 장비가 적을수록	
관련 장비 (농약)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무기 ③ 승용분무기	우선지원	
품질 관리 (품질인증)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 유기	품질관리 수준이	
품질 관리 (저온저장)	① 무저운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낮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 축산)

-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고
지역 조건	하천, 주거지 등과 가깝거나 환경보전구역에 위치 하여 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의 정도가 높은 축사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준전업 규모 ② 전업규모 ③ 기업규모	작은 규모 우선
관련 시설 (사육)	① 30년 이상 ② 20~29년 ③ 10~19년 ④ 9년 미만	시설이 노후화 될 수록 우선지원
관련 시설 (분뇨)	① 20년 이상(개별처리시설) ② 10~19년(개별처리시설) ④ 5~9년(개별처리시설) ③ 1~4년(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수거·처리 등	개별처리시설의 노후화 될수록 우선지원
품질·위생 관리 (인증)	① 무인증 ②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③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④ 유기인증 ⑤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 무항생제 또는 동물복지인증 ⑥ HACCP 또는 환경친화축산 농장 인증 + 유기인증	품질·위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70세 이상 ② 60~69세 ③ 50~59세 ④ 40~49세 ⑤ 39세 이하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뒤 쪽 참고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u>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u>

[]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뒤쪽의 작성	성방법을 읽고 ?	작성하시기 브	바랍니디	ł.							
접수번호		접수일	자				처리기:	간 30일			
اعلما	성명(법인인	인 경우 명	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화번	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෦	m²)	생산기간		폐기 !	면적 릿수
신성내용											
품목전환	원예·특	작(m²)	-	화훼(m²)	축산(m², 미	·릿수)	일	반작물(m²)	기타(품목명)(m²)		m²)
계획											
	예금주					예금기관					
입금계좌	계좌번호					ı					
					[원에 관한 특 지급을 신청합			령」 제9조 및	! 같은	법 시행구	구칙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를 인)			
시장 • 🕆	군수・구	청장 귀	하								
그비서로	디 쪼 ;	₹ ! ¬								수수료	Ē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명 또는 인)

.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u>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u>

[양송이버섯]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번호 접수일자					처리	처리기간 30일				
시킨이	성명(법인인 경우	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및 면적(m²)	기	발효 준 [2.20)	전체 재배동 재배상(버섯 면적(m	배지)	폐기 동수 및 재배상 면적(m		1년이상 생산중단 동수 및 면적(m²)		
신청내용			협정								
			협정	이후			-		-		
품목전환	원예·특작(m²)	화훼(m²)		축신	·(m², 마릿수)		일반작물(m²)		기타(품목명)(m²)		
계획 											
	예금주										
입금계좌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	니머 ㄸ느 이)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도 서류 불필요
-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 정확인서), 출하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 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작성 방법

-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 (公簿)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적습니다.
-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 월 일)을 적습니다.
- 4. 철거・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 (법인등	월일 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생산기간
A +1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민		(m²) 및 시 육두수	8 6/16
신청 내용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육계·삼계·토종닭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가축·입목(立木) 등의 해당 품목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호의 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 (법인등	월일 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m) 및 시 육두수	생산기간
신청		시·도	시·군·구	읍·면·동	.,.			86,16
내용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u>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u>

접수	접수	신청자 내역						ᆱ	전산입력	บไ 🗝
번호	일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서	<u>г</u> д	확인	비고
				_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	산지 소재지	폐업면적	생산지 0	기용면적 등(m², 톤	<u> </u>
	(또는	어업 등록 사항)	(m²) 또는 어선톤수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휴경 등
폐업						
신청						
내용						

2. 확인 결과

·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니	배 생산지			
작한 기선 	관외 생산지		적인 기선	관오	l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생산면적(m²)	이상 유-	-	주요 내용			
(또는 어업등록사항)		틍	νιο πτ		1 표 세증			
			(있음, 없	음)				
			(있음, 없	음)				
			(있음, 없	음)				
			(있음, 없	음)				
			(있음, 없	음)				
			(있음, 없	음)				

-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생산면적을 산출
- ※ 양송이버섯은 재배상(버섯배지) 면적 기재

2018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8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mark>직인</mark>

[별지 제3호의2 서식]

<u>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u>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8년 펴	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힙	나다.	
		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u>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u>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1	2	3

-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원, 명, ha)

지원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지급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 농업인, 농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3) 지원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 1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4) 지원대상 품목 ④

(단위: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 (시·도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지급인원(명)				
	총 계	사업량(ha,마리 등)				
_		지급액(백만원) 지급인원(명)				
	시·군·구	시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원대상	명	지급액(백만원)				
품목명	시·군·구	지급인원(명)				
	명	사업량(ha,마리 등)				
-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급인원(명)				
	총 계	사업량(ha,마리 등)				
	G ,,	지급액(백만원)				
-		지급인원(명)				
	시·군·구 명	사업량(ha,마리 등)				
지원대상		지급액(백만원)				
품목명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지급인원(명)				
	총 계	사업량(ha,마리 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사업량(ha,마리 등)				
지원대상	명	지급액(백만원)				
품목명	시·군·구	지급인원(명)				
	명	사업량(ha,마리 등)				
	-73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지급인원(명)				
	명	사업량(ha,마리 등)				
	-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 언		?	<u> </u> 청	지급대상		
폐 업 종 류 품 목		지 번	신청면적(㎡) 또는 규모	면적(m³) 또는 규모	변 경 사 유	

5. 준수사항: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耳	겈 확인	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월일 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폐업 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폐업 면적	생산기간
신청	M H E T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킨	717	ЩO	공근기간
내용								
2. 조사	결과 		레어시자기					
	폐업 품목	시·도	폐업예정지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지목	지목 폐업 면적 등	생산기간
조사		VI.T.	VI. T. I	H.T.9				
결과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및 사ㅠ								
위 신청 니	내용이 신청연	인의 신청 L	내용과 일치형	함과 조사 길	멸과가 사	실과 다르	일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ļ	성명	(서명)
		소속		직위		ڕ	성명	(서명)

<u>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u>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인원	폐업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자금 배정액	1 : 전원, 명, ha) 지급액
	품목(1)				
	품목(2)				
합 계	품목(3)				
	품목(4)				
	합계				
	품목(1)				
	품목(2)				
○○시·군·구	품목(3)				
	품목(4)				
	품목(1)				
	품목(2)				
○○시·군·구	품목(3)				
	품목(4)				
	품목(1)				
	품목(2)				
○○시·군·구	품목(3)				
	품목(4)				
	품목(1)				
○○시·군·구	품목(2)				
	품목(3)				
	품목(4)				
	품목(1)				
○○시·군·구	품목(2)				
	품목(3) 품목(4)				
	古可(4)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폐업 품목		폐업	지원금	지급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등	지급일	금액
시권 내용									

3. 점검 결과

7 8	점검일		 점2	걸자	저건 경기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 결과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u>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u>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 수 현 황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일	회수 사유

- * 지급 기준 면적(m²), 마리 또는 생산량을 의미
- * 시 \cdot 군 \cdot 구청장 \rightarrow 시 \cdot 도지사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